

■ 포럼 ■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인정투쟁들: 하버마스의 다문화주의와 헌법애국주의에 대한 단상

이 용 일

I.

『다문화주의. 인정의 정치에 대한 검토(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는 ‘인정의 정치’ 혹은 ‘차이의 정치’로 대표되는 찰스 테일러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그것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평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1부 테일러의 텍스트와 짧은 논평들, 2부 하버마스와 아피아의 논평으로 나뉜진 이 책의 구성은 조금 낯설다. 특히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인정투쟁들」은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논평의 성격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구성적 낯설’을 배가시킨다. 물론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책의 ‘생성과정’이 이러한 의아함을 다소 완화시켜주고 있긴 하다. 이 책의 근간이 된 것은 1990년 프린스턴대학교 인간가치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열린 테일러의 강연과 토론을 엮어 1992년 간행된 『다문화주의. 인정의 정치(Multiculturalism. The Politics of Recognition)』이다. 이것은 곧 여러 언어들로 번역되었는데, 1993년 간행된 독일어버전(Multikulturalismus und die Politik der Anerkennung)에 하버마스가 처음 논평자로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철학자이자 아프리카-아메리칸 문화 연구자인 아피아의 글을 추가하고, 부제를 살짝 바꾸어 1994년 새롭게 간행한 책이 바로 『다문화주의. 인정의 정치에 대한 검토』이다.¹⁾

현실정치에서 다루어졌던 다양한 다문화적 논의들을 철학적인 사유의 차원으로 처음 승화시킨 이 책은 엄밀히 말해 테일러의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캐나다의 ‘현실정치’로부터 발화된 테일러식 다문화주의, 즉 모든 사람

1) 1997년 피셔 출판사, 그리고 2009년 주어캄프 출판사에서 문고판으로 나온 독일어버전에는 아피아의 논평이 추가되지 않았다.

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아야하고, 그러한 공동체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문화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정의 정치’로서의 다문화주의가 국제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함께 실린 논평자들의 ‘다문화적 사유들’은 다문화주의 논쟁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버마스라는 세계적 석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버마스의 논평은 이후 그의 다른 저서 『타자성의 포용. 정치이론연구(Die Einbeziehung des Andern: Studien zur politischen Theorie)』에 재차 실렸지만,²⁾ 다문화주의 논쟁에서 ‘테일러급의 파급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심지어 독일학계의 다문화주의 담론에서조차 하버마스는 잘 인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1993년 이후 독일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 하버마스에 대한 오독이든 ‘확대해석’이든 아니면 거부이든 - 많은 부분 하버마스의 사유지평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철학적 사유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 글 역시 상아탑안의 철학적 논쟁을 넘어 독일의 다문화적 현실에 적극개입하려는 철학자의 의지가 담겨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논평이 나온 1993년은 독일사회에서 아직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생경하게 느껴지던 때였지만, 이미 사회 깊숙이 다문화사회의 징후, 더 정확히는 ‘다문화적 진통’이 최고조에 도달했던 시기였다. 그 대표적 사건들이 바로 난민법 개정과 졸링엔(Solingen) 터키난민방화사건이었다. 독일통일과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이후 발생한 거대한 동유럽 난민물결은 1970년대 이후 독일사회에 정주한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독일사회에 큰 위협이 되었다. 결국 기민연/기사연과 자민당의 집권연정은 야당이던 사민당과의 합의하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난민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난민유입을 규제하려 했다.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이러한 패쇄적인 난민정책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캠페인을 벌였다. 1960년대부터 브란트의 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던 쿤터 그라스가 ‘난민법 타협’에 항의하며 사민당을 탈당했던 것은 당시 난민법 개정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이다. 난민유입억제정책과 함께 1991년 동독의 호이에르스베르다(Hoyerswerda), 1992년 로스톡(Rostock)과 서독의 뮐

2) Jürgen Habermas, *Die Einbeziehung des Andern: Studien zur politisch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6). 이 책은 국내에도 번역되었다. 하버마스, 황태연 옮김, 『이질성의 포용. 정치이론연구』 (서울: 나남출판, 2000).

렌(Möllen)을 거쳐 1993년 졸링엔에서 그 정점을 맞았던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극우테러는 전후 국제사회에서 독일(서독)이 쌓아왔던 ‘탈민족주의적 민주사회’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 특별히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려, 이를테면 강력한 독일민족국가의 부활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보였다.

물론 외국인혐오현상과 극우테러를 규탄하는 캠페인과 데모가 독일전역에서 연일 열렸을 만큼 ‘다문화적 위기’에 대한 독일 시민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하버마스 역시 어떤 형태로든 1990년대 초 독일의 특수한 ‘이주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독일 난민정책과 “독일은 이민국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근거한 외국인정책에 대한 그의 비판이 논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현실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보여주기보다는 다문화주의 논쟁에서 핵심 되는 철학적 질문을 끄집어내어 논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핵심질문이란 바로 근대 자유주의 담론의 오랜 논쟁점이었던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이익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개인적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집단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

II.

테일러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은 테일러가 자유주의 안에서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이익이 서로 양립하기 힘들다고 보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테일러의 ‘양립불가능 체제’에 따른다면, 집단적 정체성의 확보를 위한 인정투쟁은 평등한 개인적 자유에 대한 권리와 경합하기에, 충돌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즉 테일러가 이해한 기존의 자유주의 -자유주의 1- 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맹목적이고 개인적 권리의 존중에 기초한 무조건적 평등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평등한 문화적 공존을 피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정된 자유주의 -자유주의 2- 는 주류문화에 대항하여 사장될 위기에 있는 소수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집단적·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개인적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는 대안적 자유주의 모델인 것이다.

테일러는 퀘벡의 프랑스어 사용 소수집단의 언어적 권리투쟁의 예를 들어 자신의 ‘선택적 권리이론’을 구체화했다. 프랑스어 사용인구가 다수를 차지하

는 캐나다의 퀘벡주는 앵글로색슨적 다수문화, 특별히 영어의 공용어화에 저항하는 언어정책, 이를테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시민들과 이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영어사용 학교입학 금지,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프랑스어 사용규정, 프랑스어의 공용화 등을 추진했다. 테일러는 이러한 앵글로색슨 문화에 대항하여 집단적 정체성과 문화적 생활권을 지키려는 퀘벡의 프랑스어 사용인구의 집단적 권리가 비록 개인의 자유 내지 개인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마스는 캐나다 예에 대한 테일러의 해석이 엄밀하지 않을뿐더러, 문제제기가 갖는 법학적 준거도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그는 테일러가 민주적 법치국가 안에서의 권리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바르게 이해한 권리이론은 결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맹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인 연관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자유주의적 권리체계가 불평등한 사회적 생활조건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사실 근대법은 근원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시민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평등한 권리공동체를 만들고, 그러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질서로서의 근대법은 자율적인 권리주체인 개인의 온전함을 보호한다. 하지만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개인은 단순히 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는 사적 권리주체만이 아니라 법률제정자의 역할도 가지고 있는데, 테일러가 이해한 자유주의는 이러한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버마스는 보았다. 법치국가 혹은 그것의 법질서는 모든 시민의 자율성이 균등히 보장될 때만이 정통성을 갖게 되는데, 이때의 자율성은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스스로를 법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법을 제정하는 제정자로 생각할 때 비로소 자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자유주의관이다.

동어반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하버마스가 테일러의 자유주의관에서 문제 삼는 것은 테일러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 근원적으로 같은 뿌리, 즉 자유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시각에서 테일러가 비판한 자유주의 1은 축소해석된 자유주의이고, 실제 자유주의는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 모두를 아우르는 권리체제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된 자유주의, 즉 자유주의 2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체제 속에서는 자연히 개인적 권리나 공동의 이익이나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적 권리주체들의 평등한 개인적 자유는 공적 자율성을 행사하기 위한 이해관계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보장되어 질 수 있다. 고로 개인적 자유나 공동의 이익이나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의 자리에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절차주의적 법이해가 대신 자리해야 한다고 하버마스는 역설한다. 결국 개인적 자유를 손상시킬 수 있는 체계외적인 집단적 권리의 도입을 기획하는 대신 자유주의가 원래 내포하고 있는 권리체계를 철저하게 실현해야만 하는 실천적 명제가 여기서 성립하게 된다.

하버마스에게서 법치국가 안에서의 권리체계의 실현이란 단순히 발생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절차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한 법의 적용과 제정이라는 법치국가의 이중적 코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결국 하버마스에게 헌법이란 늘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각 시대의 시민들에 의해 새로이 추구되는 역사적 기획이다. 민주적 법치국가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가진 집단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협상하고 조정하며 자신들의 법·정책적 목표들을 관철시키려 시도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권리체계의 철저한 실현이 -사회운동과 정치투쟁의 형태를 띤- 집단적 인정투쟁 없이는 요원하다는 하버마스식 결론에 도달한다. 자유주의의 자기이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목표를 관철시켰던 이러한 인정투쟁의 예로 하버마스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서구의 역사,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역사이다.

III.

인정투쟁들의 양상과 특징은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국면에 따라 실로 다양하다. 분명 하버마스가 역사적 인정투쟁의 전범으로 삼았던 계급적 인정투쟁과 젠더적 인정투쟁도 문화적 인정투쟁과 반드시 등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앞선 역사적 인정투쟁들이 그러했듯이, 문화적 인정투쟁 역시 잘 작동하는 민주적 법치국가 안에서 개인적 권리를 손상시키

지 않으면서 목표인 집단적 정체성과 문화적 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들 간의 평등한 공존은 결국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적 열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정투쟁에 의해 실현되어 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법치국가라는 공동체 단위에서의 문화적 인정투쟁은 다문화적 현실 정치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쟁되고 있는 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권리요구들을 지닌 하위문화들이 국가차원의, 혹은 공동체적 차원의 통합 없이 개별적 집단주체, 법의 제정자, 혹은 협상파트너로만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버마스는 평화로운 문화들 간의 공존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문화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 해법이란 다름 아닌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이다. 이것은 독일의 근대화를 오랫동안 추동했고, 중국에는 독일 역사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민족주의, 더 정확히는 피와 문화를 중시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합이데올로기이다. 이 개념은 돌프 슈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가 처음 만들었는데, 독일의 보수적 역사가들이 획책했던 나치과거의 상대화로 촉발되었던 1986/87년 역사가논쟁(Historikerstreit)에서 하버마스가 그것을 약간 변형시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헌법애국주의는 특정한 민주적 절차와 법원칙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기반한 정치적 문화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충성심에 바탕을 둔다. 공동의 정치문화는 공동의 역사적 경험들에서 만들어진 -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 헌법원칙들에 대한 해석에 뿌리박고 있다. 하버마스는 이것을 공동의 해석지평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해석지평 아래서 국가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적, 정치적 자기이해와 법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헌법애국주의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통합을 하버마스는 윤리적 통합으로 부른다. 공동의 역사적 경험들과 그것에 기반한 공동의 정치문화는 민주적 법치국가와 그것의 절차적 법이해 속에 윤리적으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애국주의를 통한 이러한 윤리적 통합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추상적인 정치적 통합과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주류문화가 문화적 생활형식들의 평등권을 희생시키면서 국가적 특권을 찬탈하고, 상호인정에 대한 소수문화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다고 엄중경고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민주적 법치국가가 이민자들에게 헌법애국주의를 통한 윤리적 통합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 역시 이민 2세대 이후에야 가서 가능하다 고 생각했다. 헌법애국주의를 통해서 민주적 법치국가는 이민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문화 속에서 정착된 법원칙들과 결합되어 있지, 지배문화 혹은 선도문화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헌법애국주의를 통한 통합의 전범은 민주적 민족주의를 가장 잘 구현했다는 미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적 애국주의는 종족적 민족주의에 대치되는 민주적 혹은 시민적 민족주의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개념은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 독일적 정치문화 - 속에서 만들어졌다. 독일역사에서 늘 부채했다고 평가되었던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은 극단적 민족주의가 남긴 잣대미 속에서 시작했던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독일 현대사의 주류적 시각에 따르자면, 여타 서구사회들과는 다른 독일의 특수한 길이 1945년 종말을 고했고, 이후 독일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하버마스는 이것을 “정치적 문명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했는데, 헌법애국주의는 그러한 독일의 ‘서구화과정’의 통합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인정투쟁 혹은 헌법애국주의를 통한 윤리적 통합이라는 하버마스식 다문화주의의 해법에는 전후 독일이 이루어내었던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그의 신념과 자부심이 녹아들어가 있다. ‘통일위기’에 대한 우리가 표현된 그의 논평 맺음말에도 역시 그러한 것이 묻어나 있다: “1989년까지 이루어진 정치적 문명화의 과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종족성이 아니라 시민권에 근거한 민족적 자기이해의 규범적 성취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독일의 정치적 역할을 새로운 현실에 맞추는 것이 현재 시급하다.”³⁾

하버마스의 논평이 나온 이후 한참이 지난 1998년 정권교체와 함께 독일은 비로소 본격적 다문화주의 논쟁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독일은 스스로 이민국이 되었음을 시인했고, 그에 걸 맞는 이민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하버마스의 다문화적 사유는 직접적인 언급만 없었을 뿐 독일의 다문화주의 논쟁을 주도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도문화논쟁이었다. 선도문화(Leitkultur)

3) Jürgen Habermas, “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148.

는 공동체적 가치의 합의가 없는 맹목적인 다문화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시리아 출신의 독일 사회학자 바쌌 티비(Bassam Tibi)가 만든 개념인데, 보수주의 정치가들에 의해 오용되기도 했고, 중국에는 최근 독일 다문화주의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통합계획에 채택되었다. 이것은 이주민들에게 독일의 역사, 유럽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자유·민주적 질서와 기본법을 받아들이고 독일어를 습득하여 독일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것을 요구한다. 독일적, 더 나아가 유럽적 가치와 문화로의 통합요구와 헌법애국주의를 통한 윤리적 통합을 동일시하는 것은 가치보다는 절차를 강조하는 하버마스에 대한 오독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역시 유럽의 문화와 가치, 즉 서구 근대성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헌법애국주의를 통한 통합은 유럽적 가치와 문화로의 일방적인 통합으로 나아갈 위험이 크다.

법 제정자로서 혹은 인정투쟁의 주체로서 이주민집단들이 가진 한계는 이 점을 더 부각시킨다. 주류사회와 이주민집단의 열린 대화와 소통을 지향하며 매년 열리고 있는 이주민대표자회의와 이슬람대표자회의는 표면적으로 선도문화를 터부시하지만 이주민들을 주류문화로 통합하려는 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버마스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인정투쟁을 이야기하지만, 독일사회에서 아직 문화적 인정투쟁은 가시화되지 않은 듯하다. 그렇지만 전통적 이민국들에서 보여 지는 인정투쟁들이 이주와 정착이후 여러 세대가 지난 소수문화집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독일의 이민자사회들이 그러한 연륜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주류사회와 협상하며 공동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내는 이주민집단의 형성은 여러 세대가 걸린다. 그러므로 하버마스의 다문화적 해법을 재단하는 것은 너무 이를 수 있다. 또한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비록 유럽중심주의적 혐의를 가지고 있지만 헌법애국주의를 통한 윤리적 통합은 여전히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토대 아래서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이 갈등하고, 협상하고 조정하며 문화들 간의 평등한 공존을 이루는 사회, 그것이 어쩌면 하버마스가 말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일 것이다.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hboell@naver.com